

# **2013학년도 제4차 <제307차 이사회 회의록>**

**2013. 8. 22.**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3학년도 제4차**  
**<제30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9 인	1 인

1. 일 시 : 2013. 8. 22(목). 07:30 - 09:20 (회의소집 통보일 : 2013년 8월 13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안재환, 문길주,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김선용 (9인)
- 감사 : 전성훈 (1인)

◎ 결석임원

- 이사 : 신희택, 최 홍 (2인)
- 감사 : 배홍기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 소의영, 기획처장 김민구, 병원장 유희석, 예산팀장 조경숙 (4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이종화, 기획처장 류지호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직이사 열한 분 중 아홉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윤성복

이 사

이영현

## 6. 보고사항

이사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민구 기획처장, 유희석 병원장, 이종화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각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

( 주인욱 이사가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부속병원회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재무제표 분석, 손익현황 및 경영실적 지표에 대한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의료원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다. )

이사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07차 이사회 심의 안건은 학법대우 제13-172호(2013.8.13)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제2호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제3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제4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 제5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제6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기채 승인(안), 제7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제8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제9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등 9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 제 1 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이사장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의 발전계획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요소 충족을 위한 정책에 따른 배정, 산학협력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초빙을 목적으로 총 3명 이내의 증·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확대 및 정부평가 지원사업 대비를 위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감안하여 산학협력 중점교수 또는 신규 전임교원으로 초빙계획을 세웠으며, 그 중 1명은 2014.2.28자 계약 종료되는 비정년외국인교원에 대한 대체충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재환

이사 이영현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성복 :** 일반적으로 신임교원 초빙 계획에는 증·충원이 필요한 해당 학과와 인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막연하게 초빙인원을 3명이라고 하면 초빙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사실상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초빙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체의 사장 또는 부사장 정도 직위의 분들을 교수로 채용함으로써 LINC사업 등 국고사업에서 해당 교수의 인건비 중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비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 그러한 경력자를 채용할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구체적인 학과에 대한 채용 계획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 신상협 :** 교원의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교원의 채용규모를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자동차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7.2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 어떻습니까?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타 대학에 비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올해 계획대로 모두 증·충원 한다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을 비교해 보면 전국 139개 전문대학 중 120위 정도로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초빙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 윤성복 :** 교원 채용시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경력에 따라 채용 직급이 달라지나, 경력자라 하더라도 보통은 조교수나 부교수 정도로 임용됩니다.

**이 사 윤성복 :** 최소한의 교원 충족을 위한 모집계획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2 호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3-

지환

이사

이영천

**이사장** :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교육 역량강화·LINC·WCC·노동부사업 재원을 통한 교비지출 절감, 겸임교원 감소·시간강사 증가에 따른 급여 및 강의료 증감 반영, 디자인실습실 앞 옹벽공사비용 관련 계정변경, 건축·시설관리비, 통학버스 임차료, 집기구입 등 시설 및 학생복지 개선에 따른 비용증가 반영, 국가장학금 과오지급분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626,574천원이 증가한 10,744,09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종화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사장** : 전성훈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전성훈**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의 검토사항을 두 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자동차대학 총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미사용전기이월 자금과 관련하여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당해 연도에 일시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반납과 관련해서 신입생 장학금 지급에 대한 평가 기준의 착오로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그렇게 착오로 지급된 국가장학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직무상 과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초과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환수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국가장학금을 반납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자면, 장학금 지급 평정기준이 고교성적 6등급 이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입시성적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과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를 주어 인사고과에 감점 조치를 하였고,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서 전산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윤성복** :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해당 학생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사실 원칙적으로는 환수를 하여야 합니다만, 이미 졸업한 학생도 있고 어쨌든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를 다시 회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수재  
-4-

이사 이영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사문길주** :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 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지방대학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기숙사의 시설적인 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시설 투자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신다면 양질의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문길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입	등록금수입	5,921,261	5,921,261	0
	전입및기부수입	1,348,331	1,341,331	7,000
	교육부대수입	711,460	711,260	200
	교육외수입	231,477	231,477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531,570	1,912,196	619,374
	계	10,744,099	10,117,525	626,574
지출	보수	3,364,087	3,364,087	0
	관리운영비	2,328,416	2,076,047	252,369
	연구학생경비	2,249,226	2,273,526	-24,300
	교육외비용	110,000	60,000	50,000
	예비비	20,000	4,000	16,000
	고정자산매입지출	698,589	427,669	270,92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973,781	1,912,196	61,585
	계	10,744,099	10,117,525	626,574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5 -

이선환

이사

이영천

### 제 3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설립한 법무대학원은 입학생 감소로 인해 해당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직제규정 제5조 제3항 제3호 특수대학원 중 법무대학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대학원은 2009년 1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총 5학기가 운영되었으며, 총 재적인원은 15명으로 졸업 8명, 수료 2명, 제적 5명이 되겠습니다. 법무대학원 운영개요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박상일 : 법무대학원 현황에 졸업이 아닌 수료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논문을 써서 졸업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무대학원이 직제에서 빠질 경우, 추후에 수료자가 학위 청구논문을 써서 논문심사를 통과할 경우 석사학위를 주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적하신대로 수료자 2명에 대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2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0명으로 감축하면서 폐지준비를 하여 왔는데 그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대로 조치되어 있는지, 직제규정 삭제시 졸업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그러면 여러 이사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학교 측에서 수료자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추후 법무대학원 수료자가 졸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학위수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안)을 부결하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사 박상일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조건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인욱 : 조건부 개정(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조건부 개정(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조건부 개정(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법무대학원 수료자가 추후 졸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학위수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안)을 부결하는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간서명란>

이사장 후호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제5조 (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및 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기초교육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대학원 : 대학원</li> <li>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li> <li>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법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li> </ol>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대외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어학교육원</li> <li>2. 연구처장 :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박물관</li> <li>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종합인력개발원,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li> <li>4. 법학전문대학원장 : 법학전문도서관</li> </ol>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li> <li>2. 기초교육대학 : 의사소통센터</li> <li>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li> <li>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li> <li>5. 교무처 : 아주서비스센터, 교직부</li> <li>6. 연구처 : 공동기기센터</li> <li>7. 학생처 :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li> </ol>	<p>제5조 (기구)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대학원 : 대학원</li> <li>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li> <li>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lt;삭제&gt;,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li> </ol> <p>④ 내지 ⑨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자환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p> <p>8.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p> <p>9. 대외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p> <p>10. 중앙도서관 : 출판부</p> <p>11.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p> <p>12. 종합인력개발원 : 사회진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p> <p>13.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및 비서실을 둔다.</p> <p>⑨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p><u>부 칙</u></p> <p>(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제 4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본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임교원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18명으로 이 중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이 11명,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대상이 7명입니다. 현직급 부교수인 전자공학과 이기근, 정보컴퓨터공학과 예홍진, 정태선, 행정학과 김서용,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에너지시스템학과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윤성승, 윤우일, 이승길, 이윤제 등 11명을 정년까지의 교수로, 현직급 조교수인 기계공학과 김동권, 이진우, 교통시스템공학과 윤일수, 정보컴퓨터공학과 최영준, e-비즈니스학과 이 철, 영어영문학과 유선무, 경제학과 김성환 등 7명을 임용기간 6년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고자 합니다. 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별첨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8 -

이사

이사

이영현

**이사(총장) 안재환 :** 본교의 이번 교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11명에 대해 교수 승진임용을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임용 요건으로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전임교원 임용심사 평정점수를 60점 이상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교원에 대해 학과장,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교육·연구·봉사 등의 평가 영역별로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길준규 부교수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인 상황이라 승진 임용이 부결되었고, 임용심사 평정점수가 낮은 윤성승, 이윤제 부교수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윤성승, 이윤제 두 부교수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소명을 청취한 바로는 윤성승 부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당시 설립을 위한 노력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이윤제 부교수는 교육과 연구, 봉사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해당 두 교수와 연구업적 연평균 점수가 최저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다른 승진대상교원에 비해 연구실적이 낮은 윤우일 교수에 대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성승 부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관련한 내부 구성원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업무협조와 참여에 매우 비협조적이어서 봉사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이윤제 부교수도 위원회 참여나 평가준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봉사부분에 문제가 있으나 강의평가 결과는 매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윤우일 부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로스쿨 내 법조 실무를 담당하면서 강의수행에 있어 학생평판도가 높은 부분 등 교육부분에 특별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봉사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이러한 소명서를 받은 후 교원인사위원회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윤성승 부교수에 대해서는 승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감안하여 승진제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사 윤성복 :** 평정점수, 연구업적 점수 등 계량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승진임용 여부를 평가하는데 비계량지수도 고려를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외적인 사항까지 고려되어 합산된 평가기준이 따로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지수와 비계량지수에 가중치를 두어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교원에 대한 승진 임용 평가기준을 정확히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지금 현재 평가기준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용심사평정표만 있는 상황으로 교육, 연구, 봉사, 기타의 각 평가영역에서 평가점수가 현저히 부족하더라도 총점 60점 이상만 받으면 승진제청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각 평가영

<간서명란>

이사장 후호식

이사 신재현

이사 이경현

역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임용심사평정 시 평가영역별 과락 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차제에 승진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박상일 :** 이윤제 부교수의 경우 임용기간이 2013.9.14부터 정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차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승진심사기준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까? 그리고, 정보 컴퓨터공학과 예홍진 부교수의 경우 재임경력이 14년 10개월로 되어있는데 해당기간 중에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분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이윤제 부교수는 신규임용 당시 정상적으로 9.1자로 임용되어 실질적인 전임교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기관인 법무부에서 사표수리가 지연되어 이후 임용일자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승진 임용일자를 9.14자로 하여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예홍진 부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이 다른 승진대상 교원에 비해 정량적으로 낮고 승진대상 평가논문 모두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지만, 오랜 기간 승진하지 못한 정년보장 부교수가 연구분야에서 승진임용 최저 기준을 충족하여 승진한다면 다른 정년보장 부교수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박상일 :** 윤우일 부교수의 경우 학생들 평가가 좋고 봉사점수도 높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연구업적 점수가 정량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전공이 지적재산권법인데 연구실적목록을 보면 전공 연계도 잘 안 되는 연구실적도 있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 신상협 :** 박상일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전공 연계가 안 될 경우 평가단에서 걸러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현재 각 학과(전공)별 연구실적 세부평가 기준과 내용은 각 대학(원)별로 학문적 특성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므로 전공연계 등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학문별 세부평가기준을 별도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 문길주 :** 전체적으로는 규정에 부합하여 승진임용에 문제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부 평가영역의 평정점수가 낮기 때문에 승진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규정을 바꿔야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여기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개념과 같이 이사회에서는 절차상 하자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전체적으로 승진임용 동의(안) 자체를 다시 돌려보내서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탈락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에 요구되는 역할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해당 안건에 대해 법리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다시 돌려보낼 경우 언제까지 규정을 만들어서 절차를 다시 밟아 재상정하도록 하거나,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가결하고 차기에 지적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되도록 하는 등의 정리를 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0 -  
안재환

이사 이영현

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 평정점수가 미달되면 승진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제시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과 관련된 점수도 해당 전공에 대한 논문만을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것으로 탈락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적인 규정을 여기 이사회에서 일일이 논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합니다. 사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요소들에 대해 면밀히 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승진임용 제청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나 결정권자가 다음 단계로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후 총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하자만을 따져서 가부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해당 사안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장 :** 시간이 허락한다면 문길주 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점으로 다시 돌려 보내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나, 승진시기가 9.1자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이사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사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번 승진 임용은 승인하고, 차제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확실히 심의할 수 있는 승진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명확한 기준을 갖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윤성복 :** 모호한 기준으로 승진을 탈락시킨다면 논리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교 11명의 교수 승진임용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다음 부교수 승진임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윤성복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되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명칭이 단순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조교수 재임경력 4년에는 전임강사로 재임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부교수 승진 대상자는 채용시부터 조교수로 임용되신 분들로서 전임강사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사장 :** 본교 7명의 부교수 승진임용 동의 원(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윤성복 :** 그 외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박상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1 - 2/21

이사

• | 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본교 전임교원 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 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11명의 교수 승진임용 및 7명의 부교수 승진 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아울러, 총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승진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련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원장 유희석 :**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승진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3명으로 각각 병리학교실, 영상의학교실에 조교수 2명, 인문사회의학교실에 부교수 1명입니다. 다음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4명,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3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별첨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용 동의(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박상일 :** 신규임용 교원 중 인문사회의학교실 최리나 부교수 대상자는 임용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임용 시 부교수는 처음부터 6년 기간으로 채용하게 됩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정관상 부교수 임용기간은 신규임용 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본교에서는 통상적으로 신규임용 시 최초 임용계약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 윤성복 :** 의료원도 총장께서 관할하는 기관인데 본교와 같이 3년으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대개는 임용을 앞두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신규임용을 하는데, 이 분 같은 경우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통계 전문가로 많은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인력확보 차원에서 임용기간 전에 미리 신규임용 동의를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Vanderbilt University에서 2005년부터 조교수로 재임하고 있고 연구실적이나 성과를 보더라도 부교수의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임용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어 조정의 여지가 있을지 우려 됩니다.

**이 사 장 :** 앞으로는 의료원도 신규임용 시 본교와 같이 3년으로 하고, 현재 최리나 신규임용 대상자의 경우는 이미 절차가 진행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의료원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해서 임용기간에 대해 조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무리가 없고 임용기간에서 관례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리나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규임용  
- 12 -

이사 이영현

니다.

**이사장** :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최리나 신규임용 대상자의 경우 임용기간 3년의 신규임용에 동의하되, 의료원에서 당사자와 협의시 3년으로 조율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총장이 의논해서 신규임용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외 의료원 신규·승진임용 동의 원(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박상일** : 나머지 의료원의 전임교원 임용 심사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의료원 신규 및 승진임용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윤성복** :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수정(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교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최리나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해 임용기간 3년의 신규임용에 동의하되 의료원에서 당사자와 협의시 3년으로 조율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총장이 의논해서 신규임용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신규임용 및 7명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병리학교실	권 지 은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영상의학교실	김 진 우	조교수	2013.9.1 ~ 2016.8.31 (3년)
	인문사회의학교실	최 리 나	부교수	2014.3.1 ~ 2017.2.28 (3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이상 3명 -

### 나.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전자공학과	이 기 근	교수	2013.9.1 ~ 정년
	정보컴퓨터공학과	예 흥 진	교수	2013.9.1 ~ 정년
	정보컴퓨터공학과	정 태 선	교수	2013.9.1 ~ 정년
	행정학과	김 서 용	교수	2013.9.1 ~ 정년
	정치외교학과	문 우 진	교수	2013.9.1 ~ 정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한 이사 이영현  
- 13 -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아 주 대 학 교  본 교	에너지시스템학과	박 지 용	교 수	2013.9.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소 병 천	교 수	2013.9.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윤 성 승	교 수	2013.9.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윤 우 일	교 수	2013.9.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이 승 길	교 수	2013.9.1 ~ 정년
	법학전문대학원	이 윤 제	교 수	2013.9.14 ~ 정년
	기계공학과	김 동 권	부교수	2013.9.1 ~ 2019.8.31 (6년)
	기계공학과	이 진 우	부교수	2013.9.1 ~ 2019.8.31 (6년)
	교통시스템공학과	윤 일 수	부교수	2013.9.1 ~ 2019.8.31 (6년)
	정보컴퓨터학과	최 영 준	부교수	2013.9.1 ~ 2019.8.31 (6년)
의 료 원	e-비즈니스학과	이 철	부교수	2013.9.1 ~ 2019.8.31 (6년)
	영어영문학과	유 선 무	부교수	2013.9.1 ~ 2019.8.31 (6년)
	경제학과	김 성 환	부교수	2013.9.1 ~ 2019.8.31 (6년)
	미생물학교실	박 선	교 수	2013.9.1 ~ 정년
	피부과학교실	강 희 영	교 수	2013.9.1 ~ 정년
	흉부외과학교실	임 상 현	교 수	2013.9.1 ~ 정년
	응급의학과	최 상 천	부교수	2013.9.1 ~ 2019.8.31 (6년)

- 이상 25명 -

## 제 5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우수교원 초빙을 위한 학교 노력,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 외국인 교원 확보 지속 추진 등의 배정 원칙에 따라 총 35명을 증·충원할 예정입니다. 배정 기준별로 2013학년도 미충원 15명, 정년·사직 등에 의한 결원 10명,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대비 1명 및 약학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4 -

의 2/1호

이사

이영현

대학 편제완성년도 교과부 이행점검 대비 2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24명과 비정년외국인교원 11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성복 : 2014학년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내년 본예산은 지금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2014학년도 교원신규임용 채용계획에서 승인해 주시는 정원 내에서 지금 확정이 되고,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 윤성복 :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6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사학진홍재단 융자금 기채 승인(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사학진홍재단 융자금 기채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국제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학진홍재단으로부터 신축공사비로 융자금 50억원을 기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사학진홍재단 차입금 잔액은 109억원으로 연 4.24%(변동금리)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학진홍재단 측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낮춰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금리인하를 요청하였으나 2013년도부터 신규로 차입하는 시설융자사업에 한해 금리를 3.80% 변동금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본교는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차입금을 국제학사 신축비 재원 등으로 전액 상환하고,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차입할 수 있는 국제학사 신축공사비를 기채하고자 합니다. 그 중 올해 융자배정 통지를 받은 50억원에 대해 기채 승인(안)을 상정하였으며, 2014학년도에 나머지 50억원을 추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도상환 및 신규 차입을 통해 이자부담은 매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기환  
- 15 -

이사 이영현

43,000천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본교 차입금 현황 및 기채 내역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성복 : 기존의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조기상환시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사학진흥재단에 확인한 결과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이 사 문길주 : 기채 조건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선용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기채 승인(안)은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사학진흥기금 기채 승인 내용

- 차입 예정액 : 50억원 (2014학년도 50억원 추가 신청 예정)
- 차입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 금리 : 3.80%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0년 균등 상환 (분기별 상환)

### 제 7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등록금수입 증가, 국고수입감소, 교육경비 증가 등 운영수입예산 증감에 따른 지출예산, 장기차입금 상환 및 국제학사 신축재원 차입 예산, 2012학년도 결산 이월분에 대한 지출 예산을 반영한 편성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143백만원이 증가한 243,21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민구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기호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전성훈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전성훈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기금인출 내용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다산관 리모델링 공사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인조잔디구장 준공식 행사비, 전체교수 워크숍 행사비 등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기획처장께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관점에 따라 예비비 사용의 당위성이 불분명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해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적하신대로 좀 더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산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시 공사여부를 놓고 경영대학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결정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 노력, 발전기금의 활용 등에 대한 많은 협의 끝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위낙 예산을 빼듯하게 편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추가 지출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예비비로 추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박상일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록금수입	126,902	126,381	521
	전입및기부금수입	72,290	71,097	1,193
	교육부대수입	11,735	11,319	416
	교육외수입	3,551	3,544	7
	투자와기타자산수입	7,803	6,641	1,162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재한

이사

이영현

	고정부채입금	5,030	230	4,8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5,903	13,859	2,044
	계	243,214	233,071	10,143
지출	보수	108,896	107,764	1,132
	관리운영비	28,934	27,652	1,282
	연구학생경비	66,424	63,324	3,100
	교육외비용	1,251	1,287	-36
	자산취득	12,786	15,551	-2,765
	투자와기타자산지출	7,503	9,644	-2,141
	고정부채지출	11,871	1,161	10,710
	예비비	824	1,057	-233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725	5,631	-906
	계	243,214	233,071	10,143

## 제 8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사장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발의.

이사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3.8.31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국제대학원장,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공과대학장, 정보통신대학장, 인문대학장, 학생처장 및 보직 사임서를 제출한 IT융합대학원장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학교 장의 제청을 받아 국제대학원장에 e-비즈니스학과 임재익 부교수, IT융합대학원장에 전자공학과 오성근 교수, 임상치의학대학원장에 의학과 정규림 교수, 공과대학장에 기계공학과 최윤호 교수, 정보통신대학장에 정보컴퓨터공학과 홍만표 교수, 인문대학장에 영어영문학과 정경훈 교수, 학생처장에 영어영문학과 조재형 교수를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 드립니다.

(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 IT융합대학원장의 보직 사임서와 관련해서 IT융합대학원은 주로 전자공학과 중심의 특수대학원으로서, 보직 관리상 전자공학과 학과장이 IT융합대학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학과장인 정기현 교수가 오성근 교수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교수를 IT융합대학원장으로 겸직하게 하기 위해 임명동의를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의 경우, 2년 전 해당 특수대학원이 설립이 되면서 정규림 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8 -

이사  
2013. 2. 18.

이사

이영현

수를 외부에서 발탁하여 모셔온 상황으로 사실 이 분은 전임교원으로 정년퇴직까지 1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의료원 측과 상의해 본 결과, 아직은 정규임 교수가 임상치의학대학원을 더 맡아주셔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전임교원을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사회에서 동의해 주실 경우 대우교수로 신규 임용하여 직을 계속 수행케 할 계획입니다.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정관상 대학원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대우교수로도 보할 수 있습니다. 법리상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규임 교수를 다시 한 번 임상치의학대학원장으로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윤성복** : 대우교수를 보직교원으로 임명하시려면 다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일 것이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정규임 교수의 임용기간이 2014.8.31까지인데, 그렇다면 보직임 기도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직제규정상 보직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보직임기는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면직되므로 이는 해석에 따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이사 윤성복** : 대우교수 신규임용 및 보직임명에 대한 결정은 해당 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추후 이사회에서 따로 의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새로 신규발령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장** : 그러면,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의 경우는 정규임 의학과 교수를 임기 1년의 보직교원으로 임명동의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보직교원 임용 동의 원(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윤성복** : 나머지 원(안)에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수정(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임상치의학대학원장에 대해 의학과 정규임 교수를 2013.9.1자 임기 1년의 보직교원으로 임명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의 내용과 같이 2013.9.1자 임기 2년의 보직교원으로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9 -

안재환

이사

영현

보직명	소속	직급	성명	임명일자 및 임기
국제대학원장	e-비즈니스학과	부교수	임재익	2013.09.01 / 2년
IT융합대학원장	전자공학과	교수	오성근	2013.09.01 / 2년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의학과	교수	정규림	2013.09.01 / 1년
공과대학장	기계공학과	교수	최윤호	2013.09.01 / 2년
정보통신대학장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홍만표	2013.09.01 / 2년
인문대학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정경훈	2013.09.01 / 2년
학생처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조재형	2013.09.01 / 2년

### 제 9 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사장 :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391백만원 증가한 18,11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북대구빌딩 매각으로 인한 수입 반영 및 부동산매각대 기금적립, 2012학년도 결산 차기이월자금 수입 증가, 이사장 무보수 책정에 따른 보수 감소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 이영현 상임이사가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사장 : 전성훈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전성훈 :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사 박상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0 -

의장

이사

이영현

## ■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전 입 금 수 입	4,957	4,957	0
	기 부 금 수 입	20	20	0
	예 금 이 자 수 입	2,400	2,500	-100
	수 익 재 산 수 입	1,757	1,757	0
	잡 수 입	1	1	0
	고정자산매각대	2,102	0	2,102
	고정부채입금	375	455	-80
	전기이월자금	6,505	6,036	469
	계	18,117	15,726	2,391
지 출	보 수	586	879	-293
	관 리 운 영 비	1,135	1,102	33
	지 급 이 자	37	40	-3
	법 정 부 담 전 출	5,648	5,648	0
	경 상 비 전 출	1,207	1,207	0
	예 비 비 등	101	201	-100
	기 금 적 립	2,158	146	2,012
	고정자산매입비	150	51	99
	고정부채상환	452	415	37
	차 기 이 월 자 금	6,643	6,037	606
	계	18,117	15,726	2,391

###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07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이사장님과 안재환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석임원 9인 전원이 문길주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 21 -

##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07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 9시 2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3년 8 월 22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호석
이 사	윤 성 복	윤성복
이 사	안 재 환	안재환
이 사	문 길 주	문길주
이 사	신 희 택	
이 사	주 인 육	주인육
이 사	박 상 일	박상일
이 사	신 상 협	신상협
이 사	이 영 현	이영현
이 사	김 선 용	김선풍
감 사	전 성 훈	전성훈